

수 원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9가합8829 증권관련집단소송
분배관리인 변호사 조영길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분배계획안을 별지 2 기재 수정분배계획안과 같이 수정하여 인가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분배관리인이 2010. 8. 6. 별지 1 기재와 같이 분배계획안을 제출하였는바, 위 분배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분배의 기준과 방법

각 구성원에 대한 분배의 기준과 방법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금을 현금과 주식 비율 1:1로 나누어, 현금 부분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 중 1/2을 공제한 후 권리실행 이후의 현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고, 주식 부분에서 변호사보수 중 1/2을 공제한 다음, 위 현금과 주식을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이러한 분배의 기준과 방법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인정된다.

2.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가. 소송비용

직권으로 살피건대, 분배계획안에는 '2009-01-29' 법원보관금으로 39,962,080원(= 40,000,000원(원고 소송대리인이 납부한 예납금) - 37,920원(일부 반환금))을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과 분배관리인에 대한 심문 결과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당원의 2009. 1. 21.자 화해허가결정에 부가된 소송비용 예납명령에 따라 2009. 1. 29. 4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법원은 그 중 2010. 2. 11. 신문공고료 3,300,000원 및 2010. 2. 12. 우송료 768,960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남은 보관료는 2010. 2. 17. 37,920원, 2010. 9. 30. 35,893,120원을 각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반환하였는바 (40,000,000원 = 3,300,000원 + 768,960원 + 37,920원 + 35,893,120원), 결국 위 예납금 중 원고 소송대리인이 실제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은 2010. 2. 11.자 신문공고료 3,300,000원 및 2010. 2. 12.자 우송료 768,960원임이 소명된다. 또한 '2009-08-06', '2009-08-18', '2009-08-28'자 각 사실조회회신료는 이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그 지출 사실이 소명되는 소송비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지급날짜	금액(원)	상세내역
2009-04-13	4,004,550	인지대, 송달료
2009-04-27	2,475,000	신문공고료
2009-07-16	330,200	인지대, 송달료
2010-02-11	3,300,000	신문공고료

2010-02-12	768,960	우송료
합계	10,878,710	

나. 변호사 보수

위 사건은 2,743,392,402원에 화해가 성립되어 구성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 점, 원고 대표당사자와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계약서상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착수금은 0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는 판결, 화해, 조정성립 등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중 1심에서 성공시 20%"로 약정한 점, 원고 소송대리인은 장기간의 소송수행이 요구되는 본 소송을 수임하면서 소송비용까지 우선 부담하기로 하는 등 원고 소송대리인이 패소의 위험을 모두 부담한 점, 본 소송은 화해가 이루어져 비교적 단기간에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13. 제기되어 2010. 4. 30. 화해허가결정이 날 때까지 1년의 기간이 소요된 점, 본 소송은 국내 최초의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서 참고할 만한 국내 선례가 없는 소송이었던 점, 소송준비과정 및 소송·화해진행과정에서 지출된 소송대리인의 노력 및 투입 시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분배계획안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구성원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 소송대리인이 분배관리인으로 선정되어 분배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분배관리비용을 받지 않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보수를 화해 금액 2,743,392,402원의 20%에 해당하는 548,678,480원(= 2,743,392,402원 × 0.2)으로 정한 것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고, 그 중 1/2인 274,339,240원(= 548,678,480 ÷ 2)은 현금으로, 나머지 1/2인 273,339,240원에 해당하는 보수는 피고 주식 39,932주(= 274,339,240원 ÷ 6,870원(1주의 가액은 화해내용에 따라 피고의 2009. 8. 14.자 코스닥시장 거래종가인 6,870원을

기준으로 함))로 지급하기로 한 것도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인정된다.

3. 나머지 사항

그 밖에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권리신고의 기간·장소 및 방법, 권리의 확인방법,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등 별지 1 목록 분배계획안의 나머지 사항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분배관리인이 제출한 별지 1 분배계획안은 별지 2 수정분배계획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수정분배계획안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 46조 제1, 2항에 의하여 수정하여 이를 인가한다.

2010. 9. 30.

재판장 판사 김태병

판사 김도현

판사 유성현

[별지 1]

분 배 계 획 안

1. 총원의 범위 및 채권총액

가. 총원의 범위

피고가 제27기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2008. 8. 14.부터 파생상품 관련 분기보고서 정정공시를 한 2008. 12. 19.까지 사이에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08. 12. 19.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나. 채권총액

금 2,743,392,402원¹⁾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분배할 금액

가.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금 2,743,392,402원(현금 1,371,696,201원 + 피고회사 기명주식 199,664주²⁾)

나.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1) 권리실행금액

1) 소송허가결정에 대하여 제외신고를 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피고는 대표당사자들에게, 화해금 29억원에서 제외신고자의 손해액이 원고 대표당사자 주장의 전체 손해액 12,186,389,783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였음. 소송허가결정 당시 고지된 제외신고기간(2010. 1. 25.부터 2010. 3. 26.까지) 중 장오환 등 구성원 15인이 제외신고를 하였고 그 합계 손해액은 658,097,056원임. 화해금 29억원에서 제외신고자들의 손해액이 원고 대표당사자 주장의 전체 손해액 12,186,389,783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하고 남은 새로운 손해 배상액이 **2,743,392,402원**임.

2) 화해금은 현금과 피고회사 기명주식을 1:1 비율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기명주식은 1주당 6,870원으로 계산하여 그 주식수를 산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회사가 지급해야 할 주식수는 집행권원 중 주식으로 지급할 금원인 1,371,696,201원(화해금 2,743,392,402원의 1/2)을 6,870원으로 나눈 주식수인 199,664주(소수점 이하는 버림)가 됨.

권리실행금액은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금 2,743,392,402원 전액이며, 권리실행금액 중 1/2은 현금 1,371,696,201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나머지 1/2은 피고회사 기명주식 199,664주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실행하였음.

현재 현금 1,371,696,201원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법원보관금으로 공탁되어 있고, 주식 199,664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들 소송대리인의 증권계좌(삼성증권 5445-5105, 계좌주: 조영길)에 각 보관되어 있음.

2) 분배할 금액

가) 현금 : 권리실행된 현금 1,371,696,201원에서 소송비용, 현금으로 지급될 변호사보수³⁾를 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위 현금 1,371,696,201원에 대하여 권리실행일로부터 권리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모든 구성원들에 대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 50조 제2항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날까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⁴⁾을 더한 금액

금 1,049,949,131원 + 1,371,696,201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 (1,371,696,201원 - (소송비용 47,407,830 원 + 변호사보수 274,339,240원⁵⁾) + 1,371,696,201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

나) 주식 : 권리실행된 주식 199,664주에서 주식으로 지급될 변호사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주식

159,732 주(=199,664주 - 변호사보수 39,932주⁶⁾)

3) 변호사보수액은 화해허가결정에서 기공고된 바와 같이 화해금액의 20%이며, 화해내용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구성원들에 대한 분배내용과의 형평성을 위해 변호사보수액 중 1/2은 현금으로, 1/2은 피고회사 기명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함.

4) 이하 '1,371,696,201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라 약칭함.

5) 권리실행된 현금 1,371,696,201원 x 0.2 = 274,339,240원(소수점 이하는 버림)

6) 권리실행된 주식 199,664주 x 0.2 = 39,932주(단주는 버림)

3) 권리실행금액에 대한 이자의 귀속 및 처분

권리실행금액 중 현금 1,371,696,201원에 대하여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위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할 금액에 산입함(증권사 약관 규정에 따라 주식 199,664주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없음).

3.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제항목 및 금액

가. 소송비용

금 47,407,830원

지급날짜	금액(원)	상세내역
2009-04-13	4,004,550	인지대, 송달료
2009-04-27	2,475,000	신문공고료
2009-07-16	330,200	인지대, 송달료
2009-08-06	386,000	사실조회회신료
2009-08-18	128,000	사실조회회신료
2009-08-28	122,000	사실조회회신료
2010-01-29	39,962,080	법원보관금
계	47,407,830	

나. 변호사보수

1) 보수액

548,678,480원⁷⁾(=2,743,392,402원 × 0.2)

7) 소수점 이하는 버림

착수금은 0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는 판결, 화해, 조정성립 등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중 1심에서 성공시 20%, 2심에서 성공시 25%, 3심에서 성공시 30%로 약정되어 있는바, 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금 2,743,392,402원으로 화해가 되었으므로 손해배상금의 20%가 변호사보수에 해당됨.

2) 지급방법

위 금액 중 1/2인 274,339,240원(=548,678,480원 ÷ 2)은 현금으로, 나머지 1/2인 273,339,240원에 해당하는 보수는 피고회사 주식 39,932주⁸⁾(=274,339,240원 ÷ 6,870원)로 지급함(1주의 가액은 화해내용에 따라 피고의 2009. 8. 14.자 코스닥시장 거래종가인 6,870원을 기준으로 함).

다. 분배비용

약 90,898,250원⁹⁾(= 분배관리인 보수¹⁰⁾ 5,000만원 + 분배계획안 개별 통지 우편 비용 약 7,410,130 원 + 권리확인 개별 통지 우편 비용 약 4,188,120 원 + 현금 계좌이체 수수료 약 555만원+ 주식 계좌이체 수수료 약 370만원 +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약 5만원 + 공인회계사의 보수¹¹⁾ 약 2,000 만원)

단, 분배비용(분배관리인 보수를 포함)은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분배관리인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분배관리인이 이를 부담하고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함.

8) 단주는 버림

9) 분배비용은 분배절차의 진행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0) 분배관리인 보수는 분배관리인 자신의 보수 외에 분배관리인을 돕는 실무진들의 보수까지 포함한 것으로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정해진 분배관리인의 업무인 분배계획안 작성, 1,849 계좌에 이르는 구성원의 권리신고에 대한 각 확인, 분배보고서, 분배종료보고서의 각 작성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분배계획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구성원들에게 분배계획안을 개별적으로 우편통지하는 작업 등에 소요될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11)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작성을 위해 공인회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말함.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가. 총설

각 구성원에 대한 분배액은 피고가 지급한 화해금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현금과 주식의 비율을 1:1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 항(주식의 경우)과 다 항(현금의 경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주식의 경우

각 구성원이 분배받을 피고회사 주식의 수는 $159,732 \text{ 주}^{12)} \times \text{해당 구성원의 손해액} / \text{전체 구성원의 손해액}$ 임.

다만, 단주가 발생할 경우 단주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함(피고의 2009. 8. 14.자 코스닥시장 거래종가인 1주당 6,870원을 기준으로 하고, 1원 미만은 절사함).

※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은 '법원이나 분배관리인에 의하여 권리확인된 손해액(구성원이 권리 신고한 경우)' 또는 '분배관리인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손해액(구성원이 권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을 의미하며,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은 각 구성원의 손해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함. 이하 동일함.

다. 현금의 경우

각 구성원이 분배받을 현금의 액수는 $[(1,371,696,201 \text{ 원} - (\text{소송비용 } 47,407,830 \text{ 원} + \text{변호사보수 } 274,339,240 \text{ 원}^{13)}) + \text{각 구성원의 단주에 대하여 지급될 현금 총액}^{14)}) +$

12) 권리실행된 주식 199,664주에서 주식으로 지급될 변호사보수 39,932주를 공제한 나머지 주식

13) 권리실행된 현금 1,371,696,201원 $\times 0.2 = 274,339,240 \text{ 원}$ (소수점 이하는 버림)

1,371,696,201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 ×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
+ 해당 구성원이 단주로 인해 지급받을 현금액]임.

5. 권리신고의 기간, 장소 및 방법

가. 권리신고의 기간

법원의 분배계획안 인가결정의 공고일부터 2개월간(2개월 안에 권리신고서가 분배
관리인에게도달하여야 함)

나. 권리신고의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07-34 한신인터밸리 동관 19층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135-918)

다. 권리신고의 방법

별지 권리신고서 양식에 따라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권리신고의 장소로 등기
우편을 이용하여 우편신고함(2008. 8. 14. ~ 2009. 8. 14. 피고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거
래내역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함).

※ 권리신고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해석되므로 기간 준수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권리확인방법

가. 권리확인 통지 일시 및 방법

권리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구성원

14) 각 구성원에 대한 권리확인이 마쳐져야 각 구성원에게 지급될 단주 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분배계획안 제
출 당시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임.

과 피고에게 통지함.

나. 권리확인에 대한 이의 방법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권리신고인 또는 피고는 권리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수원지방법원 제 9 민사부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음.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가. 분배금의 수령기간

권리확인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모두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간

나. 분배금의 수령장소 및 방법

1) 현금

사건담임자인 법원사무관이 구성원이 권리신고서에 기재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로 현금 계좌이체

2) 주식

분배관리인이 구성원이 권리신고서에 기재한 증권회사 증권계좌번호로 주식 계좌이체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분배계획안의 개별적인 우편통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합니다) 제38조 제1항은 '분배계획안의 고지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이하 '전자공고'라고 합니다)함으로써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규칙은 전자공고의 방식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00명이 넘는 다수의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전자공고를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 분배계획안을 고지 받지 못할 경우 권리신고를 하지 못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성원들이 분배계획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구성원들에게 분배계획안을 개별적으로 우편통지하는 것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의의를 살리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주소변경의 신고

분배계획안 고지 이후 주소가 변경된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게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참작하시어 위 분배계획안을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신고서

본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신고를 합니다.

-다 음-

1. 권리신고인의 인적사항

가. 권리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나. 권리신고인의 주소

1) 주소

2) 전자우편 주소

다. 전화번호(법인의 경우 담당자 성명 표시) , 팩스번호

라. 휴대전화번호¹⁵⁾

※ 신고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15) SMS(문자메세지)를 통해 분배절차 진행상황이 통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권리신고의 내용

가. 피고 주식회사 진성티이씨 주식을 거래한 증권사명, 지점명, 계좌번호¹⁶⁾

나. 손해액

()원

※ 안내문에 첨부된 손해액 내역 및 계산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분배금을 지급받기 위한 금융기관 등의 계좌번호

가. 현금(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나. 주식(증권회사명, 증권계좌번호)

4. 권리확인통지 방법 (통지받고 싶은 방법을 택일하여 ○ 표시)

주소로 우편 송달	전자우편 통지

2010. . .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분배관리인 귀중

16) 2008. 8. 14.~2009. 8. 14.까지의 기간 중 피고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하나의 권리신고서에 각 계좌에 해당하는 증권사명, 지점명, 계좌번호를 모두 기재할 수도 있고, 각 계좌 별로 각 권리신고서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

안 내 문

귀하의 손해액 내역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다 음-

1. 손해액 내역

분배관리인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아래 2항과 3항의 손해액 계산 산식 및 손해액 계산의 전제에 따라 산정한 귀하의 손해액 내역은 본 안내문의 별첨 1.의 '손해액 내역' 중 '4.손해액 총계'란에 기재된 금액과 같습니다.

2. 손해액의 계산산식

가. 귀하의 손해액은 각 계좌별 '처분주식으로 인한 손해액'과 '보유주식으로 인한 손해액'을 나누어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였습니다.

(손해액 = 처분주식으로 인한 손해액 + 보유주식으로 인한 손해액)

- 처분주식으로 인한 손해액¹⁷⁾ : 총원기간(2008. 8. 14. ~ 2008. 12. 19., 이하 동일) 중에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 x 매도기간(2008. 12. 20. ~ 2009. 8. 14., 이하 동일) 동안 매도한 주식수 - 매도기간 중에 매도한 주식의 매도가액

- 보유주식으로 인한 손해액¹⁸⁾ : 총원기간 중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 x

17) 첨부 '손해액 내역' 중 '3.1)처분손해액'에 기재된 금액과 같습니다. 처분손해가 아니라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0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18) 첨부 '손해액 내역' 중 '3.2)보유손해액'에 기재된 금액과 같습니다. 보유손해가 아니라 보유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0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009. 8. 14. 24:0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 피고 회사의 2009. 8. 14.자 코스닥시장 거래종가인 6,870원 x 2009. 8. 14. 24:0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나. 총원기간 중에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 = (각 매수시점별 취득가격 x 취득량)의 합¹⁹⁾ / 총매수량²⁰⁾

다. 매도기간 중 주식매도가액 = (각 매도시점별 매도가격 x 매도량²¹⁾)²²⁾의 합. 단, 각 처분시점별 매도량의 합이 총원기간 중의 순매수량에 달할 때까지만 계산하였습니다.

라. 별첨 1의 손해액 내역에 대한 항목별 설명은 별첨 2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손해액 계산의 전제

가. 총원기간 중에 순매수한 주식수는 총원기간에 취득한 주식수에서 총원기간에 처분한 주식수를 뺀 값으로 하였습니다.

나. 총원기간 이후에는 총원기간 중의 순매수 주식부터 순차로 처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 총원기간 중 취득한 주식의 처분 또는 보유 여부는 거래소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거래내역이 확인가능한 마지막 날인 2008. 8. 14.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라. 보유주식에 관한 손해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은 거래소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내역 기간(2008. 12. 19.~2009. 8. 14.)의 마지막 날인 2009. 8. 14.의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종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9) 총원기간 중 총매수가액을 의미하며, 첨부 '손해액 내역' 중 '1.2)총매수가액'에 기재된 금액과 같습니다.

20) 총원기간 중 총매수량을 의미하며, 첨부 '손해액 내역' 중 '1.1)매수량'에 기재된 수량과 같습니다.

21) 매도기간 중 매도량을 의미하며, 첨부 '손해액 내역' 중 '2.1)매도량(2)'에 기재된 수량과 같습니다.

22) 매도기간 중 총매도가액을 의미하며, 첨부 '손해액 내역' 중 '2.2)총매도가액'에 기재된 금액과 같습니다.

마. 종전에 매도기간의 시점이 2008. 12. 19.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회사가 정정공시를 한 것은 위 2008. 12. 19. 장마감 후이므로 실질적으로는 2008. 12. 20. 00:00부터 매도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4. 권리신고서에 기재할 손해액

가. 귀하가 권리신고서에 기재할 손해액은 위 2항의 손해액 계산 산식과 3항의 손해액 계산의 전제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입니다.

나. 귀하는 피고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증권회사에서 발급받아 권리신고서에 첨부하게 되는 주식거래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 가 항 손해액은 귀하가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받는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액수로서 실제 분배받게 되는 분배금의 액수(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금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귀하의 손해액이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와는 그 수액이 상이합니다.

라. 귀하로 하여금 실제로 지급받을 분배금이 아닌 위 가 항의 손해액을 권리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실제로 지급받을 분배금의 경우 각 구성원의 손해액이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연동하여 산정되도록 화해내용에서 정하고 있어서 모든 구성원에 대한 권리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신고 당시에는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 귀하가 손해액을 계산한 결과 분배관리인이 계산한 손해액 내역과 동일하여 분배관리인의 계산결과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할 경우에도 분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는 반드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총원기간 중 주식을 순매수한 내역이 있는 자 모두에게 분배계획안 및 본 안내문이 통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도기간 중의 매도로 인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분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손해액 계산 결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권리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첨 1 손해액 내역

별첨 2 손해액 내역 항목별 설명서

별첨 1

※ 계좌정보

- 증권사명 : **우리투자**
- 계좌번호 : **000-00-00000**
- 성 명 : **홍길동**

1. 2008.08.14 ~ 2008.12.19 (총원기간)의 매수, 매도 거래내역

- 1) 매 수 량 : 1,000 주
- 2) 총 매수 가액 : **7,000,000** 원
- 3) 총원기간의 평균매수단가 : **7,000** 원
- 4) 매 도 량 (1) : 500 주
- 5) 순 매 수 량 : 500 주

2. 2008.12.20 ~ 2009.08.14 (매도기간)의 거래내역

- 1) 매 도 량 (2) : 200 주
- 2) 총 매도 가액 : **1,380,000** 원
- 3) 평균매도단가 : 6,900 원
- 4) 매 수 잔 량 : 300 주

3. 처분손해액, 보유손해액 계산

- 1) 처분손해액 : **20,000** 원
- 2) 보유손해액 : **3,900** 원

4. 손 해 액 총 계 : **23,900** 원

별첨 2

손해액 내역 항목별 설명서

1. 2008. 8. 14. ~ 2008. 12. 19.(총원기간)의 매수, 매도 거래내역

1) 매수량 : 2008. 8. 14. ~2008. 12. 19. 매수주식 수의 합

2) 총매수가액 : 2008. 8. 14. ~2008. 12. 19. 총매수가액총매수가액=(각 매수시점별 매수가격 x 매수량)의 합

3) 총원기간의 평균매수단가 = 총매수가액 ÷ 매수량

4) 매도량(1) : 2008. 8. 14. ~2008. 12. 19. 매도주식 수의 합

5) 순매수량 = 매수량 - 매도량 (1)

2. 2008. 12. 20. ~ 2009. 8. 14.(매도기간)의 거래내역

1) 매도량(2) : 2008. 12. 20. ~ 2009. 8. 14. 매도주식 수의 합

※ 매도기간 중의 매도량의 합이 총원기간 중의 순매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원기간 중의 순매수량을 매도기간 중의 매도량으로 봄(즉, 매도기간 중의 매도량의 합은 총원기간 중의 순매수량을 한도로 함).

2) 총매도가액 : 2008. 12. 20. ~2009. 8.14. 총매도가액총매도가액=(각 매도시점별 매도가격 x 매도량)의 합

※ 매도기간 중의 매도량의 합이 총원기간 중의 순매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8. 12. 20. 부터 각 매도시점별 매도량의 합이 순매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매도가액을 순차적

으로 더하여 총매도가액을 계산함.

$$3) \text{ 매도기간의 평균매도단가} = \text{총매도가액} \div \text{매도량(2)}$$

$$4) \text{ 매수잔량} : \text{순매수량} - \text{매도량(2)}$$

3. 처분손해액, 보유손해액 계산

$$1) \text{ 처분손해액}^{23)} = \text{매도량(2)} \times (\text{총원기간의 평균매수단가} - \text{매도기간의 평균매도단가})$$

※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함.

$$2) \text{ 보유손해액}^{24)} = \text{매수잔량} \times (\text{총원기간의 평균매수단가} - 6,870\text{원})$$

※ 보유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함.

4. 손해액 총계

$$\text{손해액 총계} = \text{처분손해액} + \text{보유손해액}$$

23) '처분주식으로 인한 손해액'과 동일함. 처분주식으로 인한 손해액 = (총원기간 중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 × 매도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수) - 매도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의 매도가액

24) '보유주식으로 인한 손해액'과 동일함. 보유주식으로 인한 손해액 = (총원기간 중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 - 6,870원) × {(총원기간 중 총 매수주식수 - 총원기간 중 총 매도주식수) - 매도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수}

[별지 2]

수 정 분 배 계 획 안

1. 총원의 범위 및 채권총액

가. 총원의 범위

피고가 제27기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2008. 8. 14.부터 파생상품 관련 분기보고서 정정공시를 한 2008. 12. 19.까지 사이에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08. 12. 19.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나. 채권총액

금 2,743,392,402원²⁵⁾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분배할 금액

가.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금 2,743,392,402원(현금 1,371,696,201원 + 피고 기명주식 199,664주²⁶⁾)

나.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1) 권리실행금액

25) 소송허가결정에 대하여 제외신고를 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피고는 대표당사자들에게, 화해금 29억원에서 제외신고자의 손해액이 원고 대표당사자 주장의 전체 손해액12,186,389,783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였음. 소송허가결정 당시 고지된 제외신고기간(2010. 1. 25.부터 2010. 3. 26.까지) 중 장오환 등 구성원 15인이 제외신고를 하였고 그 합계 손해액은 658,097,056원임. 화해금 29억원에서 제외신고자들의 손해액이 원고 대표당사자 주장의 전체 손해액12,186,389,783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하고 남은 새로운 손해 배상액이 2,743,392,402원임.

26) 화해금은 현금과 피고 기명주식을 1:1 비율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기명주식은 1주당 6,870원으로 계산하여 그 주식수를 산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지급해야 할 주식수는 집행권원 중 주식으로 지급할 금원인 1,371,696,201원(화해금 2,743,392,402원의 1/2)을 6,870원으로 나눈 주식수인 199,664주(소수점 이하는 버림)가 됨.

권리실행금액은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금 2,743,392,402원 전액이며, 권리실행금액 중 1/2은 현금 1,371,696,201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나머지 1/2은 피고 기명주식 199,664주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실행하였음.

현재 현금 1,371,696,201원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법원보관금으로 공탁되어 있고, 주식 199,664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들 소송대리인의 증권계좌(삼성증권 5445-5105, 계좌주: 조영길)에 각 보관되어 있음.

2) 분배할 금액

가) 현금 : 권리실행된 현금 1,371,696,201원에서 소송비용, 현금으로 지급될 변호사보수²⁷⁾를 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위 현금 1,371,696,201원에 대하여 권리실행일로부터 권리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모든 구성원들에 대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날까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²⁸⁾을 더한 금액

금 1,086,478,251원 + 1,371,696,201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 (1,371,696,201원 - (소송비용 10,878,710원 + 변호사보수 274,339,240원²⁹⁾) + 1,371,696,201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

나) 주식 : 권리실행된 주식 199,664주에서 주식으로 지급될 변호사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주식

159,732 주(=199,664주 - 변호사보수 39,932주³⁰⁾)

27) 변호사보수액은 화해허가결정에서 기공고된 바와 같이 화해금액의 20%이며, 화해내용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구성원들에 대한 분배내용과의 형평성을 위해 변호사보수액 중 1/2은 현금으로, 1/2은 피고 기명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함.

28) 이하 '1,371,696,201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라 약칭함.

29) 권리실행된 현금 1,371,696,201원 x 0.2 = 274,339,240원(소수점 이하는 버림)

30) 권리실행된 주식 199,664주 x 0.2 = 39,932주(단주는 버림)

3) 권리실행금액에 대한 이자의 귀속 및 처분

권리실행금액 중 현금 1,371,696,201원에 대하여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위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할 금액에 산입함(증권사 약관 규정에 따라 주식 199,664주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없음).

3.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제항목 및 금액

가. 소송비용

금 10,878,710원

지급날짜	금액(원)	상세내역
2009-04-13	4,004,550	인지대, 송달료
2009-04-27	2,475,000	신문공고료
2009-07-16	330,200	인지대, 송달료
2010-02-11	3,300,000	신문공고료
2010-02-12	768,960	우송료
합계	10,878,710	

나. 변호사보수

1) 보수액

548,678,480원³¹⁾(=2,743,392,402원 × 0.2)

착수금은 0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는 판결, 화해, 조정성립 등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중 1심에서 성공시 20%, 2심에서 성공시 25%, 3심에서 성공시 30%로 약정되어 있

31) 소수점 이하는 버림

는바, 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금 2,743,392,402원으로 화해가 되었으므로 손해배상금의 20%가 변호사보수에 해당됨.

2) 지급방법

위 금원 중 1/2인 274,339,240원(=548,678,480원 ÷ 2)은 현금으로, 나머지 1/2인 273,339,240원에 해당하는 보수는 피고 주식 39,932주³²⁾(=274,339,240원 ÷ 6,870원)로 지급함(1주의 가액은 화해내용에 따라 피고의 2009. 8. 14.자 코스닥시장 거래종가인 6,870원을 기준으로 함).

다. 분배비용

약 90,898,250원³³⁾(= 분배관리인 보수³⁴⁾ 5,000만원 + 분배계획안 개별 통지 우편 비용 약 7,410,130 원 + 권리확인 개별 통지 우편 비용 약 4,188,120 원 + 현금 계좌 이체 수수료 약 555만원+ 주식 계좌이체 수수료 약 370만원 +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약 5만원 + 공인회계사의 보수³⁵⁾ 약 2,000 만원)

단, 분배비용(분배관리인 보수를 포함)은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분배관리인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분배관리인이 이를 부담하고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함.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32) 단주는 버림

33) 분배비용은 분배절차의 진행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4) 분배관리인 보수는 분배관리인 자신의 보수 외에 분배관리인을 돕는 실무진들의 보수까지 포함한 것으로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정해진 분배관리인의 업무인 분배계획안 작성, 1,849 계좌에 이르는 구성원의 권리신고에 대한 각 확인, 분배보고서, 분배종료보고서의 각 작성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분배계획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구성원들에게 분배계획안을 개별적으로 우편통지하는 작업 등에 소요될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35)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작성을 위해 공인회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말함.

가. 총설

각 구성원에 대한 분배액은 피고가 지급한 화해금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현금과 주식의 비율을 1:1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 항(주식의 경우)과 다 항(현금의 경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주식의 경우

각 구성원이 분배받을 피고 주식의 수는 $159,732 \text{ 주}^{36)} \times \text{해당 구성원의 손해액} / \text{전체 구성원의 손해액}$ 임.

다만, 단주가 발생할 경우 단주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함(피고의 2009. 8. 14.자 코스닥시장 거래종가인 1주당 6,870원을 기준으로 하고, 1원 미만은 절사함).

※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은 '법원이나 분배관리인에 의하여 권리확인된 손해액(구성원이 권리 신고한 경우)' 또는 '분배관리인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손해액(구성원이 권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을 의미하며,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은 각 구성원의 손해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함. 이하 동일함.

다. 현금의 경우

각 구성원이 분배받을 현금의 액수는 $\{1,371,696,201\text{원} - (\text{소송비용 } 10,878,710\text{원} + \text{변호사보수 } 274,339,240\text{원}^{37)}) + \text{각 구성원의 단주에 대하여 지급될 현금 총액}^{38)}) + 1,371,696,201\text{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 \times \text{해당 구성원의 손해액} / \text{전체 구성원의 손해액}$

36) 권리실행된 주식 199,664주에서 주식으로 지급될 변호사보수 39,932주를 공제한 나머지 주식

37) 권리실행된 현금 1,371,696,201원 $\times 0.2 = 274,339,240\text{원}$ (소수점 이하는 버림)

38) 각 구성원에 대한 권리확인이 마쳐져야 각 구성원에게 지급될 단주 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분배계획안 제출 당시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임.

+ 해당 구성원이 단주로 인해 지급받을 현금액]임.

5. 권리신고의 기간, 장소 및 방법

가. 권리신고의 기간

법원의 분배계획안 인가결정의 공고일부터 2개월간(2개월 안에 권리신고서가 분배 관리인에게 도달하여야 함)

나. 권리신고의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07-34 한신인터밸리 동관 19층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135-918)

다. 권리신고의 방법

별지 권리신고서 양식에 따라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권리신고의 장소로 등기 우편을 이용하여 우편신고함(2008. 8. 14. ~ 2009. 8. 14. 피고 주식에 대한 주식거래내역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함).

※ 권리신고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해석되므로 기간 준수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권리확인방법

가. 권리확인 통지 일시 및 방법

권리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구성원과 피고에게 통지함.

나. 권리확인에 대한 이의 방법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권리신고인 또는 피고는 권리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수원지방법원 제 9 민사부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음.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가. 분배금의 수령기간

권리확인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모두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간

나. 분배금의 수령장소 및 방법

1) 현금

사건담임자인 법원사무관이 구성원이 권리신고서에 기재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로 현금 계좌이체

2) 주식

분배관리인이 구성원이 권리신고서에 기재한 증권회사 증권계좌번호로 주식 계좌이체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분배계획안의 개별적인 우편통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합니다) 제38조 제1항은 '분배계획안의 고지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이하 '전자공고'라고 합니다)함으로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규칙은 전자공고의 방식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00명이 넘는 다수의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전

자공고를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 분배계획안을 고지 받지 못할 경우 권리신고를 하지 못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성원들이 분배계획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구성원들에게 분배계획안을 개별적으로 우편통지하는 것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의의를 살리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주소변경의 신고

분배계획안 고지 이후 주소가 변경된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게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참작하시어 위 분배계획안을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신고서

본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신고를 합니다.

-다 음-

1. 권리신고인의 인적사항

가. 권리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나. 권리신고인의 주소

1) 주소

2) 전자우편 주소

다. 전화번호(법인의 경우 담당자 성명 표시) , 팩스번호

라. 휴대전화번호³⁹⁾

※ 신고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39) SMS(문자메세지)를 통해 분배절차 진행상황이 통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권리신고의 내용

가. 피고 주식회사 진성티이씨 주식을 거래한 증권사명, 지점명, 계좌번호⁴⁰⁾

나. 손해액

()원

※ 안내문에 첨부된 손해액 내역 및 계산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분배금을 지급받기 위한 금융기관 등의 계좌번호

가. 현금(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나. 주식(증권회사명, 증권계좌번호)

4. 권리확인통지 방법 (통지받고 싶은 방법을 택일하여 ○ 표시)

주소로 우편 송달	전자우편 통지
☐	☐

2010. . .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분배관리인 귀중

40) 2008. 8. 14.~2009. 8. 14.까지의 기간 중 피고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하나의 권리신고서에 각 계좌에 해당하는 증권사명, 지점명, 계좌번호를 모두 기재할 수도 있고, 각 계좌 별로 각 권리신고서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

안 내 문

귀하의 손해액 내역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다 음-

1. 손해액 내역

분배관리인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아래 2항과 3항의 손해액 계산 산식 및 손해액 계산의 전제에 따라 산정한 귀하의 손해액 내역은 본 안내문의 별첨 1.의 '손해액 내역' 중 '4.손해액 총계'란에 기재된 금액과 같습니다.

2. 손해액의 계산산식

가. 귀하의 손해액은 각 계좌별 '처분주식으로 인한 손해액'과 '보유주식으로 인한 손해액'을 나누어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였습니다.

(손해액 = 처분주식으로 인한 손해액 + 보유주식으로 인한 손해액)

- 처분주식으로 인한 손해액⁴¹⁾ : 총원기간(2008. 8. 14. ~ 2008. 12. 19., 이하 동일) 중에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 x 매도기간(2008. 12. 20. ~ 2009. 8. 14., 이하 동일) 동안 매도한 주식수 - 매도기간 중에 매도한 주식의 매도가액

- 보유주식으로 인한 손해액⁴²⁾ : 총원기간 중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 x

41) 첨부 '손해액 내역' 중 '3.1)처분손해액'에 기재된 금액과 같습니다. 처분손해가 아니라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0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2) 첨부 '손해액 내역' 중 '3.2)보유손해액'에 기재된 금액과 같습니다. 보유손해가 아니라 보유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0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009. 8. 14. 24:0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 피고 회사의 2009. 8. 14.자 코스닥시장 거래종가인 6,870원 x 2009. 8. 14. 24:0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나. 총원기간 중에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 = (각 매수시점별 취득가격 x 취득량)의 합⁴³⁾ / 총매수량⁴⁴⁾

다. 매도기간 중 주식매도가액 = (각 매도시점별 매도가격 x 매도량⁴⁵⁾)⁴⁶⁾의 합. 단, 각 처분시점별 매도량의 합이 총원기간 중의 순매수량에 달할 때까지만 계산하였습니다.

라. 별첨 1의 손해액 내역에 대한 항목별 설명은 별첨 2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손해액 계산의 전제

가. 총원기간 중에 순매수한 주식수는 총원기간에 취득한 주식수에서 총원기간에 처분한 주식수를 뺀 값으로 하였습니다.

나. 총원기간 이후에는 총원기간 중의 순매수 주식부터 순차로 처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 총원기간 중 취득한 주식의 처분 또는 보유 여부는 거래소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거래내역이 확인가능한 마지막 날인 2008. 8. 14.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라. 보유주식에 관한 손해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은 거래소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내역 기간(2008. 12. 19.~2009. 8. 14.)의 마지막 날인 2009. 8. 14.의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종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43) 총원기간 중 총매수가액을 의미하며, 첨부 '손해액 내역' 중 '1.2)총매수가액'에 기재된 금액과 같습니다.

44) 총원기간 중 총매수량을 의미하며, 첨부 '손해액 내역' 중 '1.1)매수량'에 기재된 수량과 같습니다.

45) 매도기간 중 매도량을 의미하며, 첨부 '손해액 내역' 중 '2.1)매도량(2)'에 기재된 수량과 같습니다.

46) 매도기간 중 총매도가액을 의미하며, 첨부 '손해액 내역' 중 '2.2)총매도가액'에 기재된 금액과 같습니다.

마. 종전에 매도기간의 시점이 2008. 12. 19.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회사가 정정공시를 한 것은 위 2008. 12. 19. 장마감 후이므로 실질적으로는 2008. 12. 20. 00:00부터 매도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4. 권리신고서에 기재할 손해액

가. 귀하가 권리신고서에 기재할 손해액은 위 2항의 손해액 계산 산식과 3항의 손해액 계산의 전제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입니다.

나. 귀하는 피고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증권회사에서 발급받아 권리신고서에 첨부하게 되는 주식거래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 가 항 손해액은 귀하가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받는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액수로서 실제 분배받게 되는 분배금의 액수(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금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귀하의 손해액이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와는 그 수액이 상이합니다.

라. 귀하로 하여금 실제로 지급받을 분배금이 아닌 위 가 항의 손해액을 권리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실제로 지급받을 분배금의 경우 각 구성원의 손해액이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연동하여 산정되도록 화해내용에서 정하고 있어서 모든 구성원에 대한 권리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신고 당시에는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 귀하가 손해액을 계산한 결과 분배관리인이 계산한 손해액 내역과 동일하여 분배관리인의 계산결과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할 경우에도 분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는 반드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총원기간 중 주식을 순매수한 내역이 있는 자 모두에게 분배계획안 및 본 안내문이 통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도기간 중의 매도로 인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분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손해액 계산 결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권리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첨 1 손해액 내역

별첨 2 손해액 내역 항목별 설명서

별첨 1

※ 계좌정보

- 증권사명 : **우리투자**
- 계좌번호 : **000-00-00000**
- 성 명 : **홍길동**

1. 2008.08.14 ~ 2008.12.19 (총원기간)의 매수, 매도 거래내역

- 1) 매 수 량 : 1,000 주
- 2) 총 매수 가액 : **7,000,000** 원
- 3) 총원기간의 평균매수단가 : **7,000** 원
- 4) 매 도 량 (1) : 500 주
- 5) 순 매 수 량 : 500 주

2. 2008.12.20 ~ 2009.08.14 (매도기간)의 거래내역

- 1) 매 도 량 (2) : 200 주
- 2) 총 매도 가액 : **1,380,000** 원
- 3) 평균매도단가 : 6,900 원
- 4) 매 수 잔 량 : 300 주

3. 처분손해액, 보유손해액 계산

- 1) 처분손해액 : **20,000** 원
- 2) 보유손해액 : **3,900** 원

4. 손 해 액 총 계 : **23,900** 원

별첨 2

손해액 내역 항목별 설명서

1. 2008. 8. 14. ~ 2008. 12. 19.(총원기간)의 매수, 매도 거래내역

1) 매수량 : 2008. 8. 14. ~2008. 12. 19. 매수주식 수의 합

2) 총매수가액 : 2008. 8. 14. ~2008. 12. 19. 총매수가액총매수가액=(각 매수시점별 매수가격 x 매수량)의 합

3) 총원기간의 평균매수단가 = 총매수가액 ÷ 매수량

4) 매도량(1) : 2008. 8. 14. ~2008. 12. 19. 매도주식 수의 합

5) 순매수량 = 매수량 - 매도량 (1)

2. 2008. 12. 20. ~ 2009. 8. 14.(매도기간)의 거래내역

1) 매도량(2) : 2008. 12. 20. ~ 2009. 8. 14. 매도주식 수의 합

※ 매도기간 중의 매도량의 합이 총원기간 중의 순매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원기간 중의 순매수량을 매도기간 중의 매도량으로 봄(즉, 매도기간 중의 매도량의 합은 총원기간 중의 순매수량을 한도로 함).

2) 총매도가액 : 2008. 12. 20. ~2009. 8.14. 총매도가액총매도가액=(각 매도시점별 매도가격 x 매도량)의 합

※ 매도기간 중의 매도량의 합이 총원기간 중의 순매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8. 12. 20. 부터 각 매도시점별 매도량의 합이 순매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매도가액을 순차적

으로 더하여 총매도가액을 계산함.

$$3) \text{ 매도기간의 평균매도단가} = \text{총매도가액} \div \text{매도량(2)}$$

$$4) \text{ 매수잔량} : \text{순매수량} - \text{매도량(2)}$$

3. 처분손해액, 보유손해액 계산

$$1) \text{ 처분손해액}^{47)} = \text{매도량(2)} \times (\text{총원기간의 평균매수단가} - \text{매도기간의 평균매도단가})$$

※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함.

$$2) \text{ 보유손해액}^{48)} = \text{매수잔량} \times (\text{총원기간의 평균매수단가} - 6,870\text{원})$$

※ 보유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함.

4. 손해액 총계

$$\text{손해액 총계} = \text{처분손해액} + \text{보유손해액}$$

47) '처분주식으로 인한 손해액'과 동일함. 처분주식으로 인한 손해액 = (총원기간 중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 × 매도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수) - 매도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의 매도가액

48) '보유주식으로 인한 손해액'과 동일함. 보유주식으로 인한 손해액 = (총원기간 중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 - 6,870원) × {(총원기간 중 총 매수주식수 - 총원기간 중 총 매도주식수) - 매도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수}